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강화〉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5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2
2.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 강화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8.
3. 회부연월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Ⅲ. 검토의견

1.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u>수급계획</u>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 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u>계획</u>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u>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u> 수립) ----- ----- ----- ----- --- <u>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u> 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제4조) 개정 한 바 있음(법률 제18302호, 개정 2021.7.20., 시행 2023.7.21.).

이는 개정 전 법률이 주로 위생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비상벨 설치 등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임.¹⁾

현행법이 제1조(목적) 및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피해 예방을 포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음²⁾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현행법 제15조³⁾는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 제38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1.6.8.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제5조의 ‘수급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목적(제1조) 및 책무(제4조) 규정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의 명칭을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공중화장실등 시설점검 강화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시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u>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점검) ① ----- ----- ----- ----- ----- ----- ----- <u>다음 각 호의 사항도</u> -----.
<u><신 설></u>	1. <u>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u>
<u><신 설></u>	2. <u>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제7조제4항) 개정 한 바 있음(법률 제18302호, 개정 2021.7.20., 시행 2023.7.21.).

이는 민간소유화장실 등을 포함한 모든 공중화장실등⁴⁾에 비상벨 설

4) 현행법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치를 강제할 경우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한 민간개방화장실 감소 가능성, 비상벨이나 CCTV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대한 예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관련 논의를 반영한 것임.⁵⁾

현재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22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인 공중화장실등을 지정하고 있고,

비상벨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전체 69,385개 공중화장실 중 37,874개(54.6%)의 화장실에 비상벨 및 CCTV 등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중화장실 시점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정기점검 2회 및 수시점검 3회⁶⁾ 등 총 5회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음.

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7. (생략)

5) 제38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1.6.8.

6) 설, 추석, 휴가철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강력범죄	168 (3.7%)	143 (3.7%)	134 (4.2%)	142 (4.0%)	150 (5.2%)	737 (4.1%)
강간	59	44	43	48	59	253
유사강간	19	8	9	12	15	63
강제추행	70	76	66	65	63	340
절도범죄	1,083 (23.9%)	887 (23.0%)	727 (23.1%)	703 (19.9%)	468 (16.2%)	3,868 (21.5%)
폭력범죄	580 (12.8%)	474 (12.3%)	363 (11.5%)	454 (12.9%)	301 (10.4%)	2,172 (12.1%)
상해	77	60	34	51	31	253
폭행	287	244	160	194	125	1,010
손괴	150	139	134	176	112	711
지능범죄	1,311 (28.9%)	1,078 (28.0%)	906 (28.7%)	1,072 (30.4%)	836 (28.9%)	5,203 (29.0%)
횡령	1,309	1,076	900	1,068	829	5,182
품속범죄	1,150 (25.4%)	1,025 (26.6%)	822 (26.1%)	925 (26.2%)	958 (33.1%)	4,880 (27.2%)
성품속범죄 ⁷⁾	1,150	1,025	822	925	958	4,880
기타범죄	237 (5.2%)	145 (3.8%)	202 (6.4%)	242 (6.9%)	177 (6.1%)	1,003 (5.6%)
계	4,529	3,852	3,154	3,528	2,890	17,953

※ 자료 : 통계청(KOSIS) -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중화장실 전체 범죄 건수는 5년 전에 비하여 약 36%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에 있으나, 강간 등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등 성품속범죄는 전체 건수와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7) 성품속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음(경찰청, 2023 경찰청범죄통계, 2024).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설점검을 실시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가능한 각종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시설 점검 사항에 비상벨 등 설치·작동 여부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⁸⁾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⁹⁾ 비상벨 등 설치 여부는 이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내용에 포함되어 중복의 소지가 있어 보임.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설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사무는 시·군·구의 조례로 관리되는 자치사무로서 현행법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시 수시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이미 기존 법령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조항 소지가 있고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개정안의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가 제출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50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점검하여야 한다.

참고1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 지정 조례개정 현황 ('25.5월말 기준)

구분	기초 지자체	지자체 조례개정 현황					
		완료		개정중		향후개정	
		지자체 수	비율	지자체 수	비율	지자체 수	비율
합계	228	225	98.7%	2	0.9%	1	0.4%
서울	25	25	100%	0	0%	0	0%
부산	16	16	100%	0	0%	0	0%
대구	9	9	100%	0	0%	0	0%
인천	10	10	100%	0	0%	0	0%
광주	5	4	80%	1	20%	0	0%
대전	5	5	100%	0	0%	0	0%
울산	5	5	100%	0	0%	0	0%
세종	1	1	100%	0	0%	0	0%
경기	31	31	100%	0	0%	0	0%
강원	18	18	100%	0	0%	0	0%
충북	11	10	91%	1	9%	0	0%
충남	15	15	100%	0	0%	0	0%
전북	14	14	100%	0	0%	0	0%
전남	22	21	95%	0	0%	1	5%
경북	22	22	100%	0	0%	0	0%
경남	18	18	100%	0	0%	0	0%
제주	1	1	100%	0	0%	0	0%

참고2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현황 ('25.1월말 기준)

구 분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내 성별·장애인 화장실수(A)				안전관리시설 설치 현황(B)				설치 비율 (B/A)
	계	남 자 화장실	여 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계	비상벨	CCTV	비상벨 +CCTV	
계	69,385	26,904	28,990	13,491	37,874	27,352	2,762	7,760	54.6%
서울	9,358	3,448	3,629	2,281	7,102	4,219	800	2,083	75.9%
부산	1,181	496	523	162	1,105	841	23	241	93.6%
대구	1,966	733	743	490	906	732	62	112	46.1%
인천	2,162	799	793	570	1,564	1,175	66	323	72.3%
광주	1,009	441	441	127	409	341	18	50	40.5%
대전	744	352	352	40	578	504	5	69	77.7%
울산	2,355	822	1,106	427	2,154	1,695	13	446	91.5%
세종	724	202	221	301	314	229	34	51	43.4%
경기	13,507	5,343	5,528	2,636	6,034	4,098	775	1,161	44.7%
강원	4,036	1,638	1,635	763	1,582	1,337	101	144	39.2%
충북	4,792	1,961	2,077	754	2,282	1,840	115	327	47.6%
충남	4,034	1,560	1,868	606	2,220	1,902	126	192	55.0%
전북	4,431	1,542	1,963	926	1,745	1,429	94	222	39.4%
전남	5,429	2,171	2,283	975	2,515	2,160	224	131	46.3%
경북	5,349	2,180	2,265	904	1,874	1,458	178	238	35.0%
경남	6,299	2,449	2,794	1,056	3,687	1,853	100	1,734	58.5%
제주	2,009	767	769	473	1,803	1,539	28	236	89.7%

참고3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점검 화장실(개소)			민간점검 지원현황(회)			적발* 실적
		공공	민간	소계	점검지원	장비대여	소계	
'18년	6~12월	80,944	24,165	105,109	-	-	-	-
'19년	1~12월	298,719	116,512	415,231	52,933	3,296	56,229	-
20년	1분기	62,701	15,265	77,966	3,093	142	3,235	-
	2분기	84,147	13,353	97,500	6,611	186	6,797	-
	3분기	112,768	22,333	135,101	3,076	283	3,359	-
	4분기	113,260	22,873	136,133	3,398	222	3,620	-
	소계	372,876	73,824	446,700	16,178	833	17,011	-
21년	1분기	83,286	14,108	97,304	1,529	147	1,676	-
	2분기	101,747	25,004	126,751	4,365	311	4,676	-
	3분기	105,922	26,321	132,243	4,200	261	4,461	-
	4분기	96,436	30,342	126,778	3,609	237	3,846	-
	소계	387,391	95,685	483,076	13,703	956	14,659	-
22년	1분기	86,820	17,910	104,730	884	101	985	-
	2분기	106,851	36,173	143,024	1,305	236	1,541	-
	3분기	123,133	42,394	165,527	1,305	236	1,541	-
	4분기	112,232	41,364	153,596	2,262	186	2,448	-
	소계	429,036	137,841	566,877	5,756	759	6,515	-
23년	1분기	85,296	12,609	97,905	1,175	125	1,300	-
	2분기	90,917	22,419	113,336	2,303	1,590	3,893	-
	3분기	85,411	18,891	104,302	2,918	219	3,137	-
	4분기	79,921	19,463	99,384	3,376	387	3,763	-
	소계	341,545	73,382	414,927	9,772	2,321	12,093	-
24년	상반기	72,615	17,829	90,444	420	458	878	-
	하반기	70,325	23,705	94,030	968	582	1,550	-
	수시	57,710	-	57,710	-	-	-	-
	소계	200,650	41,534	242,184	1,388	1,040	2,428	-